

의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3호

의 안 명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의 결 일 2021. 1. 11.

주 문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월 11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지>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2021. 1.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운영 현황	2
III. 실태 및 문제점	10
1. 하천 주변 시설물에 의한 제약사항으로 물 관리 제한	10
2. 댐 방류 민원처리 관련, 지자체와 협력 및 소통 부족	11
3. 지자체의 피해산출 관련 중대본과 협조 미흡	12
4. 재난 정책보험 가입 저조 및 활성화 대책 미흡	15
IV. 개선방안	19
1. 제약사항(하천변 시설물)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의무화	19
2. 댐 방류 민원처리 시, 지자체에 통보절차 마련	19
3. 피해누락 및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안내 강화	20
4.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20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1
[참고-관련법령]	2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댐의 안정적 운영 및 복구계획 수립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민원 해소 필요
 - 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진행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 중 용담댐 및 댐 주변 피해현장을 방문('20.8.16.)하여 주민 간담회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의견 및 주민들의 고충 청취
 - '20년 8월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나 수해복구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국비지원보다는 재난 정책보험가입을 통한 재난 대비 필요성 확인

< 집중호우 및 태풍 관련 피해 집계 및 복구계획 수립 현황 >

- ▶ (특별재난지역) 총 98개 지역 선포(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
 - * 집중호우 38개 시군구·36개 읍면동, 태풍 5개 시군구·19개 읍면동
- ▶ (피해집계) 총 1조 2,585억원(집중호우 1조371억원, 태풍 2,214억원)
- ▶ (복구계획) 총 4조 340억원(집중호우 3조4,277억원, 태풍 6,063억원)

- 이에, 위원회는 댐 관리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재난 복구계획 절차 개선, 재난 정책보험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20. 9월 ~ 11월 초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부처 의견조회 : '20. 11월 ~ 12월
- 제도개선 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1. 1월

II. 운영 현황

□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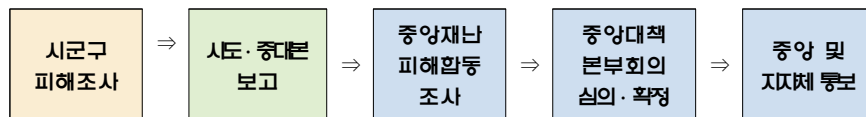
- (피해복구 계획 수립)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중대본')가 매년 피해복구계획 수립·추진

※ 재난안전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피해 파악·집계)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신고를 기초로 자체조사 실시 및 현황파악 후 **재난종료후 10일(공공시설 7일)까지** 최종 피해 결과를 '중대본'에 시스템*으로 제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자연재해 복구계획 수립 업무 흐름도 >



- 중대본은 국고지원대상 판단을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재난피해합동조사 이후 피해금액 및 복구계획 심의·확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역중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 후 대통령이 선포

< 참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시·군·구 재정력 지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준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45억원	4.5억원
0.1 이상~0.2 미만	60억원	6억원
0.2 이상~0.4 미만	75억원	7.5억원
0.4 이상~0.6 미만	90억원	9억원
0.6 이상	105억원	10.5억원

* 재정력지수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출처 :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위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

- (국가·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조기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부담
※ 「재난안전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고지원 : 기초지자체의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국고지원 피해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하되, 재난분야 주관 부처별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한 복구단가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 재난지원금 주요 사항 >

▶ 국고지원 피해 기준

시·군·구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 피해기준
0.1 미만	18억원
0.1 이상~0.2 미만	24억원
0.2 이상~0.4 미만	30억원
0.4 이상~0.6 미만	36억원
0.6 이상	42억원

▶ 재난구호 분야별 주관부처 지원 사항

주관부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이재민 구호 및 생계 지원
국토교통부	주택복구, 주거비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축산물 증식·가축 입식 등
해양수산부	어선·어구 등 복구, 양식시설 복구, 수산생물 입식
산림청	산림시설 복구, 임업시설 철거, 산림작물 복구, 병해충방제(농약대)

▶ 주요 재난지원금 지급 사항

구분	대상	단위	지원금액	비고
인명 피해	사망·실종	명	2,000만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상 장해 1~7급	명	1,000만원	
	장해 8~14급	명	500만원	
주택 피해	전파·유실	동	1,600만원	
	반파	동	800만원	
	침수	동	200만원	
	소파	동	100만원	
생계 피해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1인 가구	45만원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 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2인 가구	77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8만원	
		6인 가구	169만원	

▶ 재난지원금 지급시 제한 사항

- 가구별 재난지원금 합계를 최대 5천만원으로 한정

- 지자체 지원 :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통한 복구가 원칙이며, 기초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비용 부담후 ‘재난지원금’ 지급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광역기초 지자체별 복구비용 부담 >

구분	복구비 부담 비율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미만	50%	50%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	40%	60%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	30%	70%

- (피해 간접지원) 재난지원금 외에 개별 규정에 의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간접지원* 실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간접 지원 등)

< 간접지원 유형 >

▶ (일반간접지원)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등

▶ (특별간접지원) *특별재난지역만 적용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 간접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에서 정하거나, 공공기관 등의 실질적인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또한, 공공기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 및 납부유예, 추가 자금융자 등의 지원책 마련

□ 재난정책보험 운영으로 자연재해 피해 시 자립 유도

- (재난정책보험 의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써, 자연재해에 의한 농·어·임업인들의 피해발생시 보험을 통해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 도모

※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일부 지원) 재난정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고 남은부분을 농·어·임업인이 부담(자부담)
- (재난정책보험 유형) 3개 유형의 재해보험을 소관부처에서 각각 운영

구분	풍수해보험 (‘06년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08년 도입)
		농산물 (‘01년 도입)	가축 (‘97년 도입)	
주관부처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재해유형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태풍(강풍), 우박 등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폭염	태풍, 해일, 적조, 강풍 등
보험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사과 배 등 62종	소, 돼지 등 16종	넙치, 전복 등 28종 및 그 양식시설
가입방식	희망자 가입	희망자 가입	희망자 가입	희망자 가입
보험료*	- 국고지원: 47~68% - 자 부 담: 8%~47.5%	- 농산물 -국고지원: 40~60% -자 부 담: 60%~40% - 가축 -국고지원: 50% -자 부 담: 50%		- 국고지원: 50% - 자 부 담: 50%
보험가입률	- 신규주택: 15.5% - 비닐하우스: 8.6% (‘20.9 기준)	- 농작물: 38.8% - 가 축: 93.3% (‘19년 기준)		39.1% (‘19년 기준)
보상수준	시설물 기준단가의 70, 80%, 90% 보상	가입금액의 60%~92% 보장	시가의 60%~100% 수준	- 수산물: 산지 가격의 85~90% 수준 - 양식시설: 원상복구비 보상
보험운용	위탁 민간보험사	농협	농협, 민간보험	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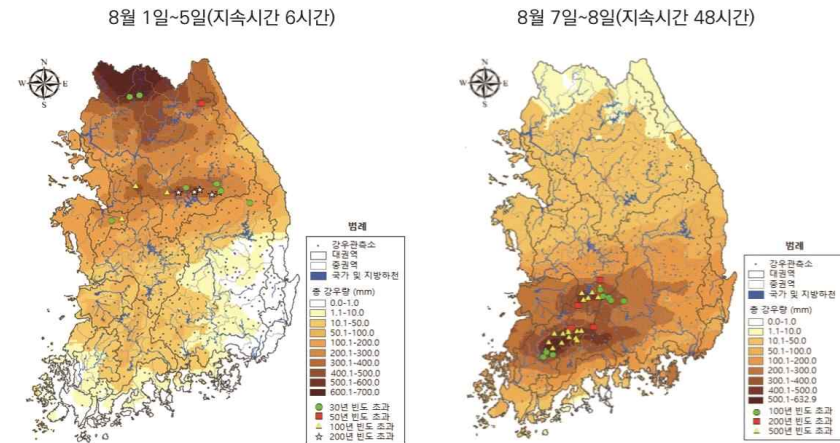
(출처 : 2018년도 풍수해보험 실무편람(행정안전부, 2018))

※ <참고> '20년 8월 집중호우 관련 피해 및 정부 대응

□ 8월 집중호우 관련 주요 피해 현황

- '20년 장마기간 중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는 최장기간(총 54일), 대량의 강우를 동반(687mm, '73년 이후 2위 기록)하여 큰 피해를 유발
- 8월 초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한 한탄강·섬진강·금강·낙동강 주변은 최대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로 하천의 설계빈도(최대 100년) 초과

< 8월 집중호우 총 강우량 및 강우빈도 분석 >



출처 : 이승수 외(2020), 2020년 홍수현황과 항구적 대책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번 집중호우 관련, 일부 다목적댐 하류지역*의 경우 피해원인에 대한 판단기준의 차이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지역주민의 갈등 발생
- * 용담댐(전북 진안군), 섬진강댐(전북 임실군), 합천댐(경남 합천군)
- 주민과 지자체는 댐의 긴급 방류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며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
- 반면, 관계부처는 수해피해 원인이 이례적인 집중호우, 하천제방 및 지류하천 관리, 댐 방류 등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

< 8월 집중호우 관련, 주요 강·하천 인접 지자체 피해현황 >

지자체		피해 내역			
		인명피해	이재민	주택침수	농경지*
충북	영동	-	61세대/125명	61동	221.47ha
	옥천	-	25세대/60명	19동	158.03ha
충남	금산	-	133세대/295명	133동	486.88ha
전북	무주	-	10세대/15명	10동	254.17ha
	진안	-	32세대/63명	29동	611.76ha
	남원	-	577세대/1,165명	536동	1240.63ha
	임실	-	22세대/48명	15동	232.91ha
	순창	-	183세대/338명	168동	645.64ha
전남	곡성	사망 6/부상 5	515세대/1,018명	463동	872.17ha
	구례	부상 2	712세대/1,518명	709동	409.42ha
	광양	-	22세대/38명	21동	55.86ha
경남	하동	-	88세대/188명	84동	38.15ha
	합천	-	78세대/138명	78동	402.24ha
합계		사망 6/ 부상 7	2,668세대/5,444명	2,569동	3,327.45ha

* 농경지 피해는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와 농경지 침수피해를 포함

* 출처 : 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취합

- 해당 피해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추가 국고지원을 받았으며,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 재해보험에 가입한 가구에게는 재해보험금을 지급

*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진안·무주·순창·남원,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합천,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임실군 성수면·신태면,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항의 및 관계기관 대응

- 수해피해를 입은 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항의방문과 시위를 지속 전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
- 각 지자체에서는 공동 결의문 채택, 환경부장관·수자원공사사장 면담 등 공동대응을 통해 보상과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건의

< 댐 하류 지방자치단체의 댐 관련 주요 건의사항 >

- ▶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규명
- ▶ 댐 관리규정 전면 재개정, 세부운영 지침·매뉴얼 마련
- ▶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 환경부 주관리청 전담관리 필요
-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 ▶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 정부는 피해 현장방문(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을 통한 의견수렴,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홍수대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추진

-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위원회’** 및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추진단’** 구성

※ 국민권익위원장은 용담댐 및 댐 주변 피해현장을 방문(20.8.16.)하여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

*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을 유지

< 댐 하류 수해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범정부 기구 현황 >

▶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위원회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 운영방식 : 전문가관 용역을 통한 원인조사, 정부추천 전문가·지자체 추천 전문가·주민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조사협의회 구성

▶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추진단

- 주관부처 :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6개 부처
- 운영방식 : 사면붕괴 방지, 댐·하천 관리, 도시침수 예방 등 각 반별로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공동발표(지자체와 전문가 참여)

○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추진단은 '20.11.26.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

- 댐 관리와 관련하여 댐 운영체계 개선과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 하류 주민소통 강화 및 방류정보 전달체계 개선** 등을 포함
-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품목별 단가 현실화, **재난 정책보험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 등을 추진

<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주요내용 >

① 유형별 맞춤형 예방 대책 마련

- ▶ (댐·하천 안전강화) 댐·하천설계기준 상향 및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하향, 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및 댐 운영협의회 구성, 주요 시설의 보수·보강 등
- ▶ (급경사지 붕괴 방지) 관리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재정비, 난개발로 인한 재해 예방 강화, 모니터링 등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관측장비 확충 등
- ▶ (도시 침수 예방)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 상향, 침수예방 인프라 확충, 지하차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 등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협업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

-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공유 및 상황관리, 기상예보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주민 중심의 마을 단위 비상연락 대피체계 구축 등

③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근원적·항구적 피해회복 지원강화

- ▶ 재난지원금 품목별 지원단가 현실화, 의연금 지급 상한액 확대, 재난 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상향·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풍수해보험) 보험료 국비 지원을 상향(43.5% → 56.5%) 및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 완화(14~45% → 14%)

(농업재해보험) 방재시설(미세살수장치, 방상팬) 설치 농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확대(10% → 20% 할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육상양식장 시설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 및 무사고 어가 대상 보험료 할인(5%) 도입

-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제도 도입, 반복 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 사업 확대 등

(출처 :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11.26.))

Ⅲ. 실태 및 문제점

1 하천 주변 시설물에 의한 제약사항으로 물 관리 제한

-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댐의 탄력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댐 하류지역에 위치한 제약사항*으로 인해 효율적인 물관리 제한**

* (제약사항) 댐의 기능(담수·방류 등 수위조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지역, 시설, 민원 등을 총칭(공사현장·취약제방·지장물·세월교 등)

- 보통 다목적댐 상·하류지역에 제약사항이 수십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계획방류량* 50% 미만의 수준에도 침수

* (계획방류량) 댐 설계 기준상의 홍수 유입 시 방류할 수 있는 최대량

- 올해 집중호우 시기에도 제약사항과 관련한 댐 방류민원으로 방류량을 조절하는 등 홍수에 대비한 댐의 사전준비에 장애 발생

< 용담댐 제약사항 관련 민원 수용으로 인한 방류량 조절 현황 >

민원신청일자	민원요지	민원처리결과
7.15. 7.24. 7.29.	경작지 통행을 위한 방류량 감소 요청	(7.31.) 방류량 감소 (300→46m³/s)
7.21. 7.26. 7.28. 7.30.	A 세월교 통행을 위한 방류량 감소 요청	
7.24. 7.29.	B 세월교 통행을 위한 방류량 감소 요청	
7.27. 7.30. 8.3.	00군 어업이 가능하도록 방류 종료 요청	
7.30.	A진입도로 통행 관련 방류량 감소 요청	
7.30.	B진입도로 통행 관련 방류량 감소 요청	

* 출처 :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제출(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3404, 2020.11.6.)

- 댐 상·하류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적고, '20년 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비 분담률의 변경으로 **지자체의 추진 동력이 저조**

구분	당초	변경후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50, 광역20, 기초30	광역50, 기초50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50, 기초50	기초100

- 환경부는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 및 적극적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재원 마련 및 협조가 필요한 관계정부 및 지자체의 연계방안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관련 대책 :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13.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

-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부 주관, 지방 및 소하천의 경우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운영되어 제약사항 해소 시 관계기관의 고려가 필요
- 댐 하류에 설치된 세월교* 등 제약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할 때 부처 중심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가능
- * 세월교 : 하천에 흙관(원통)을 깔고 시멘트를 위에 덮어 만든 소규모 교량, 하천범람시 물에 잠김

2 댐 방류 민원처리 관련, 지자체와 협력 및 소통 부족

- '20. 8월 집중호우 발생 이후 언론·국정감사 등을 통해 댐 방류와 관련한 민원처리 과정에 문제점 대두
- 일부 댐의 경우 지자체 요청 및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홍수 이전 사전방류를 하지 못하는 등 민원과 관련한 홍수조절 장애 발생

【관련 언론보도】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용담댐 관련 집중호우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물(방류량)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며 주민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힘(8.12. 조선일보)
-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금산군이 당시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금산군 안전총괄과가 지난달 26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에 ‘용담댐 방류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와 “최근 잦은 호우로 댐 방류가 잦아 하루 제원면 대산리 세월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잦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방류량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8.14. 한겨레)
-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때 제대로 대응했는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은 초당 3천 톤을 방류하기 1주일 전, 수자원공사의 수위예측시스템이 이미 빗나갔지만, 하류 지역 민원 때문에 방류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10.19. KBS)

- 댐 방류와 관련한 민원처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민원처리규정이 필요하나 매뉴얼 등 내부지침에는 관련규정이 부재

* 일부 지역의 민원으로 인한 댐 방류량 조절 논란이 결국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등 특수성이 확인(현재는 수자원공사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환경부는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댐 방류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으로 향후 방안 수립 시 주변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한 세부계획 마련 필요

* 댐 방류 민원에 대한 일반처리 절차, 민원처리 시 방류량 및 수위조절의 변경에 대한 정보공유, 민원 불수용 시 지자체와의 연계방안 등

< 댐 방류 관련 민원처리내역(2020년) >

(단위 : 건)

구분	합계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합계	45	27	3	15
방류량 조절요청 민원에 대해 승인	20	10	-	10
방류량 조절요청 민원에 대해 불허	25	17	3	5

* 출처 : 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제출(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3404, 2020.11.6.)

3 지자체의 피해산출 관련 중대본과 협조 미흡

- 자연재해 종료 후 피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현황 제출은 10일(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완료할 것을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별표

* 과거 피해현황 제출기한이 14일이었으나 긴급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 등의 요청으로 '07년부터 10일로 단축 운영

-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신고서 제출기한과 지자체의 피해현황 제출기한이 일치, 현실적으로 기한을 촉박하게 운영

- 이 기간 동안 피해주민의 신고, 기초 지자체의 현장 정밀조사, 피해금액 산출, 시스템 입력 등이 모두 진행

-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피해현황 제출 일정이 긴급하게 운영되고 입력기한의 연장 및 피해입력 수정 등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누락·

과소지급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반복 발생

- 피해 신고서 제출 마감일과 피해입력 마감일이 동일하고,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같은 피해입력기간을 부여하여 정확한 피해입력이 곤란

【실태조사 주요사례】

- 재난종료 후 10일 동안 피해조사와 입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A 지자체)
- 피해신고 제출 마감일에 다량의 신고서가 제출되며, 이 날이 피해조사와 입력의 마지막 날이라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B 지자체)
- 우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지역이라 피해가 광범위하고 신고건수가 폭증했는데도 피해조사와 입력 등의 기간이 7일(사유시설 10일)로 동일하여 고충이 심함(C 지자체)

- 일부 농작물·산림작물 등의 침수피해의 경우 신고 당시에는 피해가 경미하나 향후 2~3주 사이에 고사되는 등 단기간 내 피해확정 불가

【실태조사 주요사례】

- 우영, 마, 인삼, 조경수, 파프리카 등 일부 작물의 경우 피해조사 당시 '농약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스템 입력 이후 '대파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주요 지자체)
- * 대파대(새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 비용), 농약대(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 당초 피해입력에는 주택침수로 처리했으나, 물이 빠진 이후 확인 결과 구조가 뒤틀리는 등 보수범위가 광범위해 전파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시스템 수정이 불가(D 지자체)

- 접경지역·산악지역 등의 경우 추가 재해 위험으로 인해 피해현장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으며, 도서지역은 현장조사를 위한 이동에 시간이 다수 소요되어 정확한 피해입력에 어려움 발생

* '20. 8월 집중호우 당시 철원 이길리 마을의 경우 한탄강 범람으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겼으며, 지리유실 등으로 주민이동도 어려워 결국 집단이주를 결정

【실태조사 주요사례】

- 전방지역 지뢰유실 등으로 인한 도로통제로 확인이 지연되었으며, 산사태 등의 매몰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어 피해입력기간에 현장 조사가 불가(E 지자체)
- 도로 및 하천 유실·매몰로 인하여 10일 내에는 응급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에 피해현장에 접근이 불가하여 실 피해상황 파악이 기간 내 불가(F 지자체)
-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재난발생 시 전문인력의 즉각적인 현장투입이 어렵고 선박이 유일한 이동수단으로 신속한 현장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시일이 다수 소요(G 지자체)

○ 최초 피해신고에서 누락·과소 신고가 된 피해는 관련 규정에 의거 모두 지자체에서 별도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피해복구 재원 마련을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입력기한을 경과한 피해신청 건에 대해 복구계획 수립 시 대상에서 제외

* 관련 사항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별도 실태조사, 혹은 중대본의 점검 등의 의무가 없어 피해 당사자가 신고 등의 절차가 없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이와 관련, 중대본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조사기한 연장 및 피해입력 수정에 대한 허용기준을 갖고 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피해지역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올해 지자체에서 연장협의를 신청한 건이 전무

< 지자체 피해조사 관련 기간연장 관련 규정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제7조(조사기간 등)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 별표 중 2. 지방재난피해조사단 항목에서 그 밖의 사항
- 2) 해당 시·도 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 이전까지는 피해현황 등에 대한 시스템 수정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 면담 결과 전라도 등 일부지역에서만 활용

○ 지자체가 자체 복구계획 수립 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락 및 축소신고 된 피해가 복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입력에 대한 중대본과 지자체간의 적극적 협조 필요

4 재난 정책보험 가입 저조 및 활성화 대책 미흡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 정책보험 가입 필요성 증대

- 잦은 자연재해와 반복되는 예산투입으로는 자연재난 대응에 한계 노출
- 재난지원금은 전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목적이거나,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원 금액이 적다는 불만 상존

* 한국방재협회 보고서(2019)에 따르면, 무상지원 형태인 재난지원금은 전체 피해복구비용 대비 30%~50% 수준에 불과, 완전복구 위한 추가 재원 필요

- 이에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정책보험에 대한 농·어·임업인들의 가입과 재난정책보험 가입후 보험금 수령에 의한 피해 복구 유도

* 전북 임실군 실태조사 결과, 집중호우 관련 주택침수로 인한 보험금이 약 4백만원~7백만원으로 재난지원금(2,000천원)의 2배~3.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재난 정책보험료관련 국비외 지자체(광역시, 기초)의 지원이 재정력 내지 관심도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재난 정책보험 가입 확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19년 기준 정책보험 가입률 : 풍수해(비닐하우스) 86%, 농작물 38.8%, 양식수산물 39.1%

- 지자체의 정책보험 지원을 상향시 가입자 증가세 뚜렷

* 전북 임실군의 경우, 올해 풍수해보험료 지원비율을 전년 대비 10.2~15.7%p 상향하여, 주택 77%, 온실 2,619%(내재형 비닐하우스 포함) 신규 가입률 기록

< 예 풍수해보험(비닐하우스 관련 20.8월 피해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 >

지자체	국비 지원	지자체 지원			동·어민 개인 부담 (자부담)
		광역부담	기초부담	소계 (광역+기초)	
전북 임실	43.50% (동일)	4.65%	37.60%	42.25%	14.25%
충남 금산		12.68%	29.58%	42.25%	14.25%
충북 영동		16.38%	16.38%	32.75%	23.75%
충북 옥천		16.38%	16.38%	32.75%	23.75%
전북 남원		4.91%	27.84%	32.75%	23.75%
전북 부안		8.06%	8.06%	16.13%	40.38%
전북 진안		8.06%	8.06%	16.13%	40.38%
전북 순창		8.06%	8.06%	16.13%	40.38%
전남 곡성		4.50%	4.50%	9.00%	47.50%
전남 구례		4.50%	4.50%	9.00%	47.50%
전남 광양		4.50%	4.50%	9.00%	47.50%
전남 하남		4.50%	4.50%	9.00%	47.50%
경남 함안		4.50%	4.50%	9.00%	47.50%

* 출처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자체 통계자료

- 또한 재난정책보험 주관 부처*에 따라 정책활성화 방안 추진 정도가 상이하고, 일부 정책보험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문제도 존재

* 정책보험별 주관부처 : 풍수해보험(행안부), 농작물보험(농식품부), 양식수산물보험(해수부)

- 국민안전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해수부의 정책보험 활성화대책은 상대적으로 저조

< 행안부의 풍수해보험관련 활성화 대책 >

- ▶ (행안부 주관 지자체 평가에 반영) 지역안전도진단 지표(배점 2점), 재난관리평가 지표(배점 3점)에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 및 보험료 지원 실적을 반영
- ▶ (미흡기관 점검·컨설팅) 가입실적 저조, 풍수해보험료 관련 지방비 체납, 지방비 추가지원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입실적 제고, 보험료 미납처리 등 점검·컨설팅
- ▶ (주기적 매뉴얼 개정) 보험상품, 가입절차,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절차 등 주요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을 위한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을 매년 개정 후 발간

- 실제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게 제출하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경우, 재난정책보험(풍수해·농작물·양식수산물) 유형중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만을 묻고 있어 농작물·양식수산물보험에 대한 홍보 및 가입유도 미흡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란에 '풍수해보험' 가입의사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피해자의 탈의·탈의복을 입고 신고할 때, 신고장표 등을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집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동임대 세입자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교 수	()고등학교 ()고등학교 명								
재산지원을 지급할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	가입자 정보	성명:	성년출생:	
	무선전화	()	-			가입자 정보	성명:	성년출생:	
도시가스 사용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성년출생: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승인적(소유 + 입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연락·허가·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확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승인신청 여부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승인적(소유 + 입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연락·허가·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확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승인신청 여부	[]	[]	[]	[]	[]	[]	[]	[]	[]
3.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타 시·군·구 피해인 고 여부	여 [], 부 []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부 [], 부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자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동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정책보험중 '풍수해보험'만 가입의사 확인!

- 특히, 해수부의 자연재해 피해 간접지원 방식인 '긴급경영자금 용자'의 경우 가용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난정책보험 가입자에 대해 간접지원 (경영자금 용자 등)을 배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야기

* 농식품부의 긴급경영자금 용자의 경우 정책보험 가입자도 지원 가능

【국민신문고】

-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 용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재난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감수하고 보험을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용자금 등을 지원 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 조치인가요? ('18.11월. 국민신문고)

IV. 개선방안

1 제약사항(하천변 시설물)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의무화

- 댐 제약사항 해소 대책 마련 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되, 각 기관별 협력사항을 구체적 명시 및 의무화하여 대책의 실효성 확보

< [예시] 대책마련 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사항 >

- ▶ (관계부처) 댐 하류 제약사항 조사(합동), 국가하천에 소재하는 제약사항 해소 협의 (국토부), 지자체간 이견 발생 시 협의·조정(행안부), 배수문·양수장 관리(농식품부) 등
- ▶ (지방자치단체) 댐 하류의 제약사항 조사, 주민대상 조사결과 공유 및 건의사항 수렴, 지방하천·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시 제약사항 해소 협의 등

- 대책 수립 시 용역을 통한 세부 합동점검 방안,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순차적 해소방안, 주민협의 등 단계별 개선방안 수립 필요

⇒ 환경부, 「풍수해 대응 혁신 세부과제」에 반영

2 댐 방류 민원처리 시, 지자체에 통보절차 마련

- 댐 방류량 조절에 대한 댐 상·하류의 입장이 다른 점을 고려, 관련 민원처리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 [예시] 댐 방류 관련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

- ▶ 댐 방류에 대한 민원을 수용할 경우 민원처리 결과 및 민원으로 인한 댐 수위 변화·수위 조절방안 등을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 민원처리결과와 통보 전 검토결과를 민원통보 지자체 또는 개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필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리)

⇒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 및 운영 매뉴얼 개정

* 환경부, 「풍수해 대응 혁신 세부과제」 11. '댐관리규정 및 운영 매뉴얼 개선' 실행 시 반영

3 피해누락 및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안내 강화

- 재난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시 누락 및 축소신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대상 피해입력 관련 규정·절차의 숙지방안 강구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 및 피해입력의 수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요청기한 등을 포함하고, 누락 및 축소신고 건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복구계획 수립 의무 강조
 - 지자체는 주민자치조직(이·통장)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누락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등 교육 강화

⇒ 행정안전부, 복구계획 수립 관련 설명자료(교육) 등에 반영

4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들의 재난 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재난 정책 보험 소관부처의 다각적 활성화 방안 마련

< [예시] 재난 정책보험 활성화 방안 >

- ▶ 재난 정책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 점검·컨설팅 추진
- ▶ 지자체 보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편람 등 업무매뉴얼 발간
- ▶ 재난 정책보험 지원조례 표준(안) 보급(현재 약 30여개의 재난 정책보험 조례 운영중)
- ▶ 재해 피해신청서 서식 개선(풍수해보험 이외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에서 세부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2천만원 대출)의 경우, 재난 정책보험 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 해양수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계획」에 반영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① 제약사항(하천변 시설물)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의무화	▶ 댐 상·하류 제약사항 해소대책 마련 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사항을 명시 및 의무화하고, 합동으로 대책 추진 ⇨ 환경부, 「풍수해 대응 혁신 세부 과제」에 반영	환경부
② 댐 방류 민원처리 시, 지자체에 통보절차 마련	▶ 댐 관련 민원처리 시, 주변 지자체 대상 협력강화 및 방류정보 공유 등 지자체에 통보절차 마련 ⇨ 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댐관리 매뉴얼」 개정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③ 피해누락 및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안내 강화	▶ 복구계획 수립 시 누락 및 축소신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대상 피해신고 및 시스템 입력 절차 안내를 강화 ⇨ 행정안전부, 복구계획 수립 관련 설명자료(교육) 등에 반영	행정안전부
④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난 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들의 재난 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방안 마련 필요 ⇨ 부처별 가입촉진 방안 수립 ▶ 해양수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추후에는 재난 정책보험 가입자도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 해수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조치기한 : '21년 7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 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목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목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세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12.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댐관리규정

[시행 2019. 12. 26] [제11차 개정(한국수자원공사)]

제5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이용하여 공익의 증진과 홍수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댐운영계획) ① 댐관리자는 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댐 상·하류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댐수위 및 유입량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및 월간 댐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댐운영계획은 매년 10월 까지, 월간 댐운영계획은 매월 시작일 전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7. 1., 2019.12.26. >

② 댐관리자는 유입량 및 용수수요량 등의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상감수 및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7. 1., 2019.12.26. >

③ 댐관리자는 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일 수계 내 2개 이상의 댐을 연계한 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댐간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댐의 기본기능 및 댐 사용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댐관리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질개선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천유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용도별 우선순위) 댐의 저수는 수문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한다.

1.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
2. 이상감수시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용수의 순으로 공급한다.

제11조(방류시 조치사항) ①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송·사이렌 또는 확성기, 문자메시지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알려야하며,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 2017. 1. 3. >

1. 관할 시·군·구에서 댐 관리자에게 통보한 하류주민 < 신설 2017. 1. 3. >
2. 하천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서 댐 관리자에게 통보한 어업, 수상 레저, 하천공사 등의 이해관계자 < 신설 2017. 1. 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과 같이 유입되는 홍수량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방류 개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또한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류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1. 3. >

③ 댐관리자는 본댐에서 수문방류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신설 2017. 1. 3. >

1. 수문조작당시의 기상 및 유입량·방류량·댐수위 등 수문에 관한 사항 < 신설 2017. 1. 3. >
2. 수문조작사유, 조작한 수문의 명칭 및 개도, 조작개시 및 종료시간 < 신설 2017. 1. 3. >
3. 댐 및 부속시설물과 댐상·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에 관한 사항 < 신설 2017. 1. 3. >
4. 방류에 따른 경보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 신설 2017. 1. 3.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신설 2017. 1. 3. >

제14조(홍수조절) ①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수기 종료시점까지 댐유역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된 경우
2. 댐유역에 강우예보가 있더라도 발전방류 등을 통하여 홍수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② 댐관리자는 댐의 수문을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위해 방류할 때에는 댐 상·하류의 수문상황, 별표 1에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방류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계전체의 홍수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류량 및 방류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는 발전방류로써 최대한 조절하되, 초과할 경우에는 수문방류를 통하여 실시한다.
- ④ 본댐 및 조정지댐의 수문조작순서는 별표 1에 따르며, 수문의 조작에 관한 세부사항은 댐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⑤ 댐관리자는 보조여수로를 활용하여 댐의 홍수조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댐 운영 및 여수로 조작방법은 댐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 ⑥ 댐관리자는 해당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홍수조절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